

「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

[시행 2012. 1. 4] [국무총리훈령 제578호, 2012. 1. 4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06.12.27, 2009.1.16>

제2조(기능) 시화호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 <개정 2006.12.27, 2009.1.16>

1. 시화호(유역 및 인근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사항
2. 시화호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
3. 그 밖에 시화호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 및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4.2.17, 2012.1.4>

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 이 경우 제7호에 따른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을 포함하여 모두 4명으로 한다. <개정 2004.2.17, 2006.12.27, 2009.1.16, 2012.1.4>

1.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
 - 가. 국무총리실
 - 나. 기획재정부
 - 다. 농림수산물부
 - 라. 지식경제부
 - 마. 환경부
 - 바. 국토해양부
 - 사. 문화재청
2. 인천광역시·경기도의 담당 국장
3. 안산시·시흥시·군포시 및 화성시의 부시장
4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담당 본부장
5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담당이사
6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담당 본부장
7. 안산시·시흥시·군포시 및 화성시에 소재하는 환경연합단체의 회원으로서 수질 등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안산시·시흥시·군포시 및 화성시의 장의 추천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 자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4.2.17>

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[제목개정 2004.2.17]

제6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<개정 2004.2.17>

제7조(전문위원회) ①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또는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06.12.27>

②전문위원은 수질·갯벌·생태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인으로 한다.

③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4.2.17]

제8조(실무협의회) 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.

②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[전문개정 2006.12.27]

제8조의2(사무국) ①위원회를 보좌하고 상시적으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②사무국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[본조신설 2006.12.27]

제8조의3(여론수집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·세미나의 개최 또는 설문조사·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6.12.27]

제9조(협조요청 및 조사·연구 의뢰 등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06.12.27>

[제목개정 2006.12.27]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4.2.17>

제11조(운영세칙) 이 훈령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·실무협의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6.12.27>

부칙 <제00578호, 2012. 1. 4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